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업명** : 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
○ **대 상** : **스마트교차로운영SW(TAS, TMA)시스템, 영상분석서버**
○ **발주자** : 광양시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** : (주)라온로드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'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'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 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이천이백만원정(₩22,000,000원)(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 년 11 월 일

발주자 광양시장 박성현 (인)

공급사 (주)라온로드 이석중 (인)

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업명** : 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
○ **대　상** : HP서버 29대(HP-DL360 Gen 10)
○ **발주자** : 광양시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** : (주)씨플랫폼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'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'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 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일천육백삼만팔천원정(₩16,038,000원)(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 년　11 월　일

발주자　　광양시장　　박성현　　(인)

공급사　　(주)씨플랫폼　　배근태　　(인)

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업명** : 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
○ **대　상** : **DBMS 관리·장애처리 소프트웨어 32조**
○ **발주자** : 광양시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** : (주)티맥스티베로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'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'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삼천이백만원정(₩32,000,000원)(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 년　11 월　일

발주자	광양시장	박성현	(인)
공급사	(주)티맥스티베로	박경희	(인)

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업명** : 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
○ **대　상** : **영상수집·분배·저장·관리 솔루션, VMS라이선스**
○ **발주자** : 광양시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** : (주)다누시스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'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'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구백구십만원정(₩9,900,000원)(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 년　11 월　일

발주자　　광양시장　　박성현　　(인)

공급사　　(주)다누시스　　강원호　　(인)

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업명** : 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
○ **대　상** : **영상반출 보안솔루션 ContentSAFER v3.0**
○ **발주자** : 광양시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** : (주)마크애니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'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'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 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삼백삼십만원정(₩3,300,000원)(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 년　11 월　일

발주자　　광양시장　　박성현　　(인)

공급사　　(주)마크애니　　최　고　　(인)

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업명** : 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
○ **대 상** : **파이오링크 PAS-K3200 L4스위치 4대**
○ **발주자** : 광양시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** : ㈜파이오링크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'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'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.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.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사백오십만원정(₩4,500,000원)(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 년 11 월 일

발주자 광양시장 박성현 (인)

공급사 (주)파이오링크 조영철 (인)

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업명** : 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
○ **대 상** : **교통신호제어시스템,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SW**
○ **발주자** : 광양시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** : (주)동인시스템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'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'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 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삼천팔백오십만원정(₩38,500,000원)(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 년 11 월 일

발주자 광양시장 박성현 (인)

공급사 (주)동인시스템 곽동달 (인)

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업명** : 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
○ **대 상** : Secure Gate v3.5 4조
○ **발주자** : 광양시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** : (주)한싹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'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'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.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.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육백육십만원정(₩6,600,000원)(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 년 11 월 일

발주자	광양시장	박성현	(인)
공급사	(주)한싹	이주도	(인)

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업명** : 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
○ **대 상** : **SAN SW, 스토리지 6대**
(DELL - MDS 9132T, POWER STORE 500T, ME5024, UNITY 380)
○ **발주자** : 광양시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** : 다올티에스(주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'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'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일천삼십육만이천원정(₩10,362,000원)(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 년 11 월 일

발주자	광양시장	박성현	(인)
공급사	다올티에스(주)	홍정화	(인)

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업명** : 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
○ **대　상** : **시큐아이 NGF 100 2대, 1500 5대, 2000 2대**
○ **발주자** : 광양시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** : (주)파워존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'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'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 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일천이백만원정(₩12,000,000원)(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 년　11 월　일

발주자	광양시장	박성현	(인)
공급사	(주)파워존	고기봉	(인)

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문서번호** : ALE-TE-20260092
○ **사업명** : 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
○ **대 상** : 알카텔루슨트 내,외부 백본스위치 4대
○ **발주자** : 광양시
○ **제조사** : Alcatel-Lucent Enterprise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'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'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이천일백만원정(₩21,000,000원)(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ALE KOR
ALCATEL-
ENTER

2026 년 11 월 일

발주자 광양시장 박성현 (인)

제조사 Alcatel-Lucent Enterprise TEE JYH CHONG (인)

ALE KOREA LLC
ALCATEL-LUCENT
ENTERPRISE

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업명** : 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
○ **대　상** : D.AMO암호화솔루션(DA-TIB 16core*1copy, 8core*1copy)
○ **발주자** : 광양시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** : 펜타시큐리티(주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'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'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오백오십만원정(₩5,500,000원)(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 년　11 월　　일

발주자	광양시장	박성현	(인)
공급사	펜타시큐리티(주)	김태균	(인)

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업명** : 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
○ **대 상** : **BIS 운영 소프트웨어**
○ **발주자** : 광양시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** : (주)아이티코어스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'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'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 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이천삼백만원정(₩23,000,000원)(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 년 11 월 일

발주자 광양시장 박성현 (인)

공급사 (주)아이티코어스 김성하, 박철홍 (인)

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업명** : 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
○ **대 상** : **ITS 운영 소프트웨어, ITS 홈페이지**
○ **발주자** : 광양시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** : (주)아이티코어스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'2027년 광양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및 현장 장비 유지관리 용역'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 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삼천이백만원정(₩32,000,000원)(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 년 11 월 일

발주자 광양시장 박성현 (인)

공급사 (주)아이티코어스 김성하, 박철홍 (인)